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
등기번호	742287			
등록번호	110111-7422879			
상호 출	주식회사 두들린			
본 점 🚣				
,	2020.08.03 변경 2020.08.14 등기			
공고방법				
1주의 금액 금 5,000 원				
발행할 주				
	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 및 각각의		자본금의 액	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
발행주식의 보통주식	총수	600 주 600 주	급 3.000.000 원	

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	자본금의 액	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
발행주식의 총수 600 주	3	
보통주식 600 주	급 3,000,000 원	
발행주식의 총수 661 주		2020.07.18 변경
보통주식 600 주		2020.07.23 등기
우선주식 61 주	급 3,305,000 원	
발행주식의 총수 744 주		2021.04.27 변경
보통주식 600 주		2021.04.30 등기
<u> 우선주식 61 주</u>		
상환전환우선주식 83 주	급 3,720,000 원	
발행주식의 총수 803 주		2021.04.28 변경
보통주식 600 주		2021.04.30 등기
우선주식 61 주		
상환전환우선주식 142 주	금 4,015,000 원	

목 적

- 1.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
- 1. 통신판매업 (전자상거래업)
- 1. 교육서비스업
- 1. 소프트웨어, 데이터베이스, 정보처리 및 정보서비스 제공사업
- 1. 연구개발 서비스업
- 1. 연구개발업

열람일시 : 2021년06월01일 19시10분18초

742287

- 1. 뉴미디어 영상기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용등 전문 프로그램의 제작사업
- 1. 광고 대행업
- 1. 평생교육사업 및 원격 평생 교육사업
- 1. 시각데이터 및 영상데이터(이미지, 비디오)을 활용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
- 1. 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업
- 1.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

임원에 관한 사항

사내이사 이태규 951208-*****

사내이사 서동민 000325-*****

사내이사 홍정환 910401-*****

2020 년 07 월 17 일 사임 2020 년 07 월 23 일 등기

대표이사 이태규 951208 *******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55, 703동 1304호(삼평동, 봇들마음)

대표이사 이대규 951208 *******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38, 870 303(이매동, 진흥아파트) 2021 년 01 월 25 일 주소변경 2021 년 02 월 08 일 등기 대표이사 이태규 951208-****** 경기도 성낙시 분당구 양현로 138 807도 303호(이매도, 지흥아교

대표이사 이태규 951208-******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38, 807동 303호(이매동, 진흥아파트)

2021 년 02 월 08 일 경정 2021 년 04 월 20 일 등기

종류주식의 내용

상환전환우선주식

(배당)

- 1. 본건 우선주는 [참가적, 비누적적] 우선주로서 본건 우선주를 소유한 자(이하 "본건 우선주주")는 액면가의 [0%](이하 "우선배당율")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"우선배당금")을 배당받는다. 회사는 배당가능이익(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라 계산된다)이 있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로 배당금 지급결의를 득한 경우 우선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, 회사가 배당을하지 못하거나 우선배당금에 미치지 못한 배당을 한 경우, 회사는 배당하지 못한 우선배당금을 차기에 이월하여 차기의 배당금과 함께 [누적(이러한 이월 및 누적과정은 계속될 수 있다) 합산하여 본건 우선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]
- 2. 회사의 보통주에 대한 배당율이 우선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건 우선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.
- 3. 회사가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주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본건 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우선주 또는 본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로 배당을 받는다.

(잔여재산의 분배 등)

- 1. 본건 우선주주는 회사가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납입금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의 주주에게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.
- 2. 본건 우선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율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.
- 3. 회사는 본건 우선주주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건 우선주 전부가 상환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유상소각되기 전까지는 보통주에 대한 유상소각을 할 수 없다.

(의결권)

1. 본건 우선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. 본건 우선주주는 회사의 주주총회에 상정된

742287

안건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진다.

- 2. 본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
- 3. 본건 우선주주(본 계약으로 발행되는 우선주의 우선적 권리)에게 불리한 주주총회의 결의 가 있을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 단, 상법 제435조(종류주주총회)와 상법 제436조(준용규정)에 의해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강제하지 않는다. (신주인수권)
- 1. 본건 우선주주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신주인수권을 가진다.
- 2. 본건 우선주주가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배정받는 주식은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동종의 우선 주로, 유상증자의 경우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한다.
- 3. 본건 우선주주는 본조의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주금을 회사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러한 신주인수권의 이전 내지 제3자의 주금납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(전환권)

- 1. 본건 우선주주는 2021년 4월 27일 이후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.
- 2.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(이하 "전환비율")는 1로 한다.
- 3.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[10]년으로 하고,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로 전환된다.

(전환조건의 조정)

- 1. 회사가 비상장 및 비등록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공개 및 상장, 등록 시 공모가격의 70%에 해당하는 가격과 직전 전환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. 본 항의 경우 조정일은 공모청약일로 하고, 회사는 조정이 발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통보한다.
- 2. 회사가 비상장 및 비등록 법인인 경우에는 상장법인을 포함한 타 법인과의 합병 또는 피인수 또는 자산양수도 또는 영업양수도시 회사의 주당 합병가액의 70%에 해당하는 가격과 직전전환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. 본 항의 경우 조정일은 공모청약일로 하고, 회사는 조정이 발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통보한다.
- 3. 조정 후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,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, 회사는 주총결의 및 법원의 인가 등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,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후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격으로 한다. 단, 전환가격을 액면가격으로 하는 경우, 추후 관련법규의 변경으로 액면가격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전환가격을 조정한다
- 4. 회사는 신주, 전환우선주,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(이하 "신주 등 발행"이라고 한다)하는 경우,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건 상환전환 우선주의 1주당 취득 가격 및 제5조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당 발행가격,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 (이하 "발행가격 등"이라고 한다)을 정할 수 없다.
- 5. 회사가 본건 상환전환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"발행가격 등"을 정하여 "신주 등 발행"하는 경우 본 건 상환전환 우선주의 전환조건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 다.

742287

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= (투자자의 본건 상환전환 우선주의 1주당 취득 가격) / (투자자의 본건 상환전환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"발행가격 등")

- 6. 전항에도 불구하고 전항에 의해 조정되는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(이하 "전환비율"이라고 한다)가 기존의 전환조건 조정에 의해 확정된 전환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기존에 확정된 전환비율을 유지한다.
- 7.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되다.
- 8. 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본건 상환전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우선주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보장되도록 본건 상환전환 우선주의 전화조건이 조정된다.
- 9.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동등배당한다.

(전환된 주식의 배당 등)

- 1. 본건 우선주주가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전환권을 행사하여 본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, 그 보통주의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동등배당한다. (일반상환권)
- 1. 본건 우선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본건 우선주주의 이러한 청구가 있을 경우,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자금의 범위 내에서 본건 우선주를 약정된 상환가액으로 상환하여야 한다.
- 2.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자금을 추가적으로 획득한 경우, 그 자금을 본건 우선주주가 제15.1조에 따라 상환청구를 하였으나, 상환되지 아니한 본건 우선주를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- 3. 본건 우선주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,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우선주가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- 4. 회사는 본건 우선주주의 상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을 상환할 수 없다.
- 5. 투자자는 납입일로부터 [3]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[10]년이 되는 날까지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(특별상환권)

본건 우선주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서 정한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- 1. 제4조의 진술과 보증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중대하게 사실과 다른 경우
- 2. 회사가 본 계약 제19조 내지 제27조, 제28조를 위반하고 투자자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3.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(별지3)의 특약사항을 위반한 경우
- 4. 전항의 사유로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상환이익이 없는 등의 사유로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에 연복리 12%를 가산한 금액과 실제 상환한 금액과의 차액을 투자자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 (상환가액)

본건 우선주의 1주당 상환가액은 납입된 주금에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[5%]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하고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본건

742287

우선주의 수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.

(상환의무)

- 1. 회사는 본건 우선주주의 상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[2개월] 이내에 현금으로 본건 우선주주에게 상환하여야 한다.
- 2.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을 지체한 다음 날로부터 실제 상환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 복리 12%의 비율에 의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본건 우선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2021 년 04 월 27 일 설정 2021 년 04 월 30 일 등기

주식매수선택권

- 1.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
 - 본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

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 교부할 주식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임.직원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4항에 따라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결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1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
- 2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
- 3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
- 4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
- 1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

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.

- 1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(또는 기명식 종류주식)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
- 2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(또는 기명식 우선주식)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
- 3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1.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
- 가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
- 나. 주식의 권면액
- 2.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

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.

742287

- 1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
- 2.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(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제2호에 의한 계산식)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

(부여 당시 시가 마이너스 행사가격) 곱하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

- 1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
 - 회사의 설립 또는 경영, 기술혁신에 기여하였거나,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(이하 임.직원이라 한다)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. 다만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.
 - 1. 회사의 임.직원
 - 2.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
 - 3. 대학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의 제6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기관
 - 4.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(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)의 임.직원

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. 다만, 본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(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)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

- 1.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
- 2.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
- 1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

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제6항의 이사회에서 정한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. 다만 사망하거나,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.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그 임직원 등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하는 경우 그임직원 등이 귀책사유 없이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부터 3개월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한다.

- 1.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
 1.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
 -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
 - 1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.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
 - 2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.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
 - 3.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수 없는 경우
 - 4.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1 년 04 월 15 일 설정 2021 년 04 월 30 일 등기

회사성립연월일

2020 년 03 월 12 일

742287

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

설립

2020 년 03 월 12 일 등기

-- 이 하 여 백 --

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/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700원 영수함

열 람 용

- 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- 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- 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열람일시 : 2021년06월01일 19시10분18초